

의안번호	제737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4년 10월 2일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의안 번호	737
----------	-----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2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청주시는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충혼탑 주변을 추모와 문화, 예술이 어울어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순국선열들의 공헌과 희생을 빛낼 공간으로 업사이클링 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도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2026년
- 위 치 : 서원구 사직동 604-87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4,615m²
- 총사업비 : 70억(시비 100%)
 - 공사비(60억), 용역비(9억), 공사 감리비 및 부대비(1억)
- 사업내용 : 추모,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 휴식공원 조성
- 주요시설
 - 충혼탑(H=13.1m), 추모벽(H1400×L47.48m), 잔디마당(938m²), 숲속산책로(210m), 커뮤니티스탠드(6단×90m), 건축(다목적실 등 481m²)
- 공사 추진과정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실시설계용역	공 사
• 문화재 시굴조사 추진 • 기본계획안 구성	• 관리용역사 선정·계약 • 설계공모(~ 23. 2.)	• 공모 당선작 선정 • 기본·실시설계추진 • 공원조성계획 변경	• 실시설계용역 • 실시계획인가 • 공사 착공 및 준공
2020~2021	2022	2023	2024~2026

3.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

○ 건축물

- 규 모 : 연면적 481m²(지상1층)
- 용도·구조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시설배치(안)

구분	합계	다목적실 /전시실	창고	사무실	회의실	탕비실	방송실	화장실	창고	기타
면적 (m ²)	481	173.45	20.57	50.18	44.23	12.82	16.15	47.36	29	87.24

○ 시설물

연번	구 분	규 격(mm)	재질	단위	수량	
1	층혼탑	H1310	철근콘크리트구조/ (표면)화강석판석	식	1	
2	메모리얼가벽	W600×H1400×L47480	알루미늄시트/ 화강석판석	식	1	
3	잔디마당계단A	W10800,13단	콘크리트기초/ (표면)화강석	개소	1	
4	잔디마당계단B	W10800,12단		개소	1	
5	잔디마당계단C	W1800,12단		개소	2	
6	잔디마당스탠드	W17200,6단		개소	2	
7	커뮤니티스탠드A	W300×H450~600,7단		식	1	
8	커뮤니티스탠드B	W300×H300,3단		식	1	
9	진입계단A	W12000×22단		콘크리트기초/ (표면)화강석	식	1
10	진입계단B	W2400×22단			식	1
11	진입계단C	W2400×22단	식		1	
12	진입계단D	W2400×22단	식		1	
13	테크산책로	W2000×L221210	천연데크재	식	1	
14	경사로	W1700×L50200	콘크리트기초/ (표면)화강석판석	식	1	
15	조형의자A	W4200×H450~800	집성목재	개소	3	
16	조형의자B	W3000×H450~800		개소	8	
17	가벽A	H900xL1800	화강석통석	개소	1	
18	가벽B	H900xL2100		개소	1	
19	가벽C	H900xL2300		개소	1	
20	가벽D	H750xL1500		개소	1	
21	가벽E	H600xL3900		개소	1	
22	가벽F	H450xL1200		개소	1	
23	가벽G	H450xL1200		개소	1	
24	엘리베이터A	W1800xD1600	17인승/1,275kg	개	1	
25	엘리베이터B	W1800xD1600	17인승/1,275kg	개	1	
26	엘리베이터C	W1600xD1700	17인승/1,275kg	개	1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0. (생략)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

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소유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토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